별기

1 서비스 지역

tt mobile 통신 서비스의 구역은 특정 이동통신 사업자가 정한 구역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부대 서비스 제공

(1) 시보 서비스

가. 당사는 다음에 따라 시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전화번호
시보 서비스	일본 중앙 표준시에 준거한 시각을 알리는 서비스	117

이. 시보 서비스는 1 번 통화에 대해 시보를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전환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6 분이 경과한 후 12 분까지의 기간 내에 해당 통화를 종료합니다.

(2) 정보 제공 서비스

가. 당사는 다음에 따라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정보 제공 서비스	tt mobile 통신 서비스(듀얼 타입에 한함)를 이용함으로써 사전에 작성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가. 정보 제공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자에 의해 작성됩니다.

우 당사는 작성된 정보마다 그 내용, 전화번호 및 서비스 선택 번호를 정합니다.

가. 정보 서비스는 계약자 회선에서의 통화에 한해 제공합니다.

오. 정보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는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정보 서비스는 1 의 통화에 대해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상태로 한 시각부터 기산하여,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시간이 경과한 경우 해당 통화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키 계약자는 정보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 통화에 대해 별기 13(통화 시간 등의 측정 등)의 규정에 따라 측정한 통화 시간과 요금표 제 1 표 제 3(통화료)의 규정에 근거하여 산정한 요금의 지불이 필요합니다.

쿠 당사는 정보 제공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단축 다이얼 접속

당사는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계약자 회선 등으로 착신되는 통화에 대해서는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축 다이얼 번호(당사가 부여한 짧은 연결 번호를 말합니다.)로 연결합니다.

(4) 휴대폰 번호 이동성

가. 제 12 조(계약자 식별번호) 제 1 항에 따라 당사가 정하는 계약자 식별번호에 대해, 휴대전화번호 이동성을 희망하는 자는 tt mobile 계약(듀얼 타입에 한합니다. 이하 이 (4)에서 동일합니다.)을 신청할 때 그 취지를 당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해당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이동통신 사업자와 해당 전기통신 번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와 동일한 자(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포함합니다.)로 한정합니다. 또한, 플랜 내용에 따라 휴대전화번호 이동성 관련 절차에 필요 한 번호 부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번호는 당사가 해당 번호를 발행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5 일이 경과하면 무효가 됩니다.

가. 당사는 제 12 조(계약자 식별번호) 제 2 항에 규정된 경우 외에, 가.의 규정에 근거하여 tt mobile 계약자가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우 tt mobile 계약자가 해당 tt mobile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며, 휴대전화번호이동을 희망할 경우, tt mobile 계약 해지에 앞서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취지를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tt mobile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a) 초기 계약 해지를 이용하여 tt mobile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휴대폰 번호 이동성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 번호가 당사 이외의 전기통신 사업자로부터 휴대폰 번호 이동성에 의해 이관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b) 해지하려는 계약에 관한 요금 기타 채무의 지불을 현재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가. 당사는 가.의 규정에 따라 tt mobile 계약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휴대전화번호 이동에 필요한 번호를 발급합니다.

오 당사가 에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번호에 대해서는, 당사가 해당 번호를 발행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5 일이 경과한 시점에 무효가 됩니다.

가. tt mobile 계약자는 당사가 가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번호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해야 합니다.

키 tt mobile 계약자는 우의 신청을 하는 경우, 휴대전화번호 이동성 취급 수수료 및 MNP 이탈 시 계약 해지료의 지불을 요하지 않습니다.

쿠 휴대폰 번호 이동성을 희망하는 자는, 당사가 휴대폰 번호 이동성에 관한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자로부터의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휴대폰 번호 이동성과 관련된 이동통신 사업자와 사이에, 해당 전기통신 번호에 관한 계약의 계약자 성명, 주소,생년월일, 당사가 에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번호 또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발행하는 번호 등 기타 해당 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상호 공개하거나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케 휴대폰 번호 이동성 절차 시행 중 tt mobile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전기통신 번호가 소멸되거나 해당 절차의 시행을 완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코 휴대폰 번호이동성으로 인해 휴대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사업자가 당사 이외의 휴대폰 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tt mobile 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5) 협정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보 서비스 이용 등

가. tt mobile 계약자는 tt mobile 통신 서비스(듀얼 타입에 한함)의 계약자 회선에서 일반 통화를 통해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협정 사업자의 계약 약관 규정에 따른 전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tt mobile 계약자는 당사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전보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전보 서비스 이용에 관한 요금 등을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용한 경우는 제외합니다.)에 발생한 전보 서비스에 관한 채권(전보 서비스 이용을 위해 행한 상호 접속 통신 요금에 관한

것을 포함합니다.)을 해당 사업자로부터 양도받아, 그 채권액을 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가.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사 및 협정 사업자는 계약자에 대한 개별 통지 또는 양도 승인의 청구를 생략하는 것으로 합니다.

가. 가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 사업자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에 대해서는 제 49 조(할증금), 제 50 조(연체 이자) 및 요금표 통칙의 규정에 준하여 취급합니다.

3 당사가 tt mobile 계약자에게 행하는 통지 등의 방법 및 tt mobile 계약자의 성명 등 변경에 관한 신고 의무

(1) 회사는 약관에 따라 tt mobile 계약자에게 통지 기타 연락(이하 이 별기 3 에서 "통지 등"이라 합니다)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서면 기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통지 등을 할 때에는 tt mobile 계약자로부터 신고된 성명, 명칭, 주소, 이메일 주소 및 이용 번호에 관한 정보(이하 "계약자 연락처"라 합니다)에 기초하여 합니다.

(2) tt mobile 계약자는 계약자 연락처에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신속히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서비스 취급소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3) 회사는 (2)의 신고가 있을 경우, 해당 신고 사실 증빙 서류를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tt mobile 계약자는, tt mobile 계약자가 (2)의 신고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 당사가 종전의 계약자 연락처로 발송한 서면에 대해서는, 해당 서면이 미도착인 경우에도, 통상 그 도달해야 할 시점에 해당 tt mobile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취급하는 데 동의합니다.

(5) tt mobile 계약자가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함으로 인해 당사가 신고된 계약자 연락처로 발송한 서면에 대해서도 (4)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6) 회사는 계약자 연락처로 발송한 서면이 회사로 반송되는 기타 사유로 인해 신고된 계약자 연락처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경우, 이후 서면으로의 통지 등을 하지 않기로 합니다.

(7) (6)에 해당하는 경우로 당사가 서면으로의 통지 등을 하지 않기로 한 때에는, 당사는 해당 계약자 회선으로의 전화 발신 기타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통지 등을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계약자 회선에 제공하는 부재중 응답 기능 또는 해당 계약자 회선에 연결된 단말 장비에 내장된 부재중 응답 기능 등에 통지 등을 녹음하거나 이메일 기타 방법으로 tt mobile 계약자가 해당 통지 등을 수령할 수 있는 상태로 한 경우, tt mobile 계약자가 해당 통지 등을 실제로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통지 등은 tt mobile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취급하는 데 동의합니다.

(8) 회사는 해당 계약자 회선에 대해 제 29 조(이용정지)에 따른 tt mobile 통신 서비스 이용 정지 또는 제 17 조(회사가 행하는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로서, 서면 및 (7)의 어느 방법으로도 통지 등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생략합니다.

(9) tt mobile 계약자는 (2)의 신고를 소홀히 하거나 당사에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한 경우, 당사가 해당 계약자 연락처 관련 정보에 근거하여 통지 등을 한 데 기인한 손해에 대해 당사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4 계약자의 지위 승계

(1) 상속으로 인해 tt mobile 계약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상속인은 당사가 정한 서면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것 및 당사가 tt mobile 계약자의 지위를 승인한 자의 본인 인 확인을 위한 서류로서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신속히 해당 tt mobile 통신 서비스 취급소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2) (1)의 경우 지위를 승계한 자가 2 인 이상일 때에는 그 중 1 인을 당사에 대한 대표자로 정하여 이를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 회사는 (2)의 규정에 따른 대표자의 신고가 있을 때까지 그 지위를 승계한 자 중 1 인을 대표자로 취급합니다.

(4) tt mobile 계약자는 (1)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별기 3 의 (4)부터 (9)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는 데 동의하셔야 합니다.

5 단말 장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 등의 검사

(1) 당사는 계약자 회선에 접속된 단말 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기타 전기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필요할 때에는, tt mobile 계약자에게 해당 단말 설비의 접속이 기술 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tt mobile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1985 년 우정성령 제 25 호. 이하 "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 32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를 받기로 동의합니다.

(2) 당사 직원은 (1)의 검사를 수행할 경우, 소정의 증명서를 제시합니다.

(3) tt mobile 계약자는 (1)의 검사 결과 단말 설비가 기술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자 회선에 대한 해당 단말 설비의 연결을 중단해 주셔야 합니다.

6 자영 전기통신 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 등의 검사

계약자 회선에 접속된 자영 전기통신 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 기타 전기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의 검사에 대해서는 별기 5 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7 단말 장비 및 자영 전기통신 장비가 적합해야 할 기술 기준 등

기술 기준 등
단말설비 등 규칙(1985 년 우정성령 제 31 호)

8 단말 설비의 전파 발사 정지 명령이 있는 경우의 취급

(1) tt mobile 계약자는 계약자 회선에 연결된 단말 설비(이동 무선 장치에 한합니다. 이하 이 별기 8 에서 동일합니다.)에 대해, 전파법(1950 년 법률 제 131 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당사가 총무대신으로부터 임시로 전파 발사 중지를 명령받은 경우, 해당 단말 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 무선 설비 규칙(1950 년 전파감리위원회 규칙 제 18 호)에 적합하도록 수리 등을 실시해 주셔야 합니다.

(2) 당사는 (1)의 수리 등이 완료된 경우, 전파법 규정에 따른 검사 등을 받기로 하며, tt mobile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승낙해야 합니다.

(3) tt mobile 계약자는 (2)의 검사 등의 결과, 단말 설비가 무선설비규칙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자 회선에 대한 해당 단말 설비의 연결을 중단해 주셔야 합니다.

9 단말 장비의 전파법에 따른 검사

별기 8에 규정된 검사 외에, 단말 설비(이동 무선 장치에 한함)의 전파법에 따른 검사를 수 받는 경우의 취급에 대해서는 별기 8의 (2) 및 (3)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10 자영 전기통신 설비의 전파 발사 정지 명령이 있을 경우의 처리

자영 전기통신설비(이동 무선 장치에 한함)에 대해 임시로 전파 발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의 취급에 대해서는 별기 8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11 자영 전기통신 설비의 전파법에 따른 검사

자영 전기통신설비(이동 무선 장치에 한함)의 전파법에 따른 검사를 받는 경우의 취급에 대해서는 별기 9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12 신문사 등의 기준

구분	기준
1 신문사	다음 기준을 모두 갖춘 일간 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 1) 정치, 경제, 문화 기타 공공적인 사항을 보도하거나 논의를 목적으로 하여 널리 판매되는 것. 2) 발행 부수가 1의 제목에 대해 8,000부 이상이어야 한다.
2 방송사업자	방송법(1950년 법률 제132호) 제2조에 규정된 간선방송사업자, 간선방송국제공사업자 및 일반방송사업자(유선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하는 자는 라디오방송만을 하는 자를 제외하고, 자체방송을 하는 자에 한한다.)
3 통신사	신문사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뉴스(1항의 기준을 모두 갖춘 일간신문지에 게재하거나 방송사업자가 방송하기 위한 뉴스 또는 정보(광고를 제외합니다.)를 말합니다.)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통신사

13 통화 시간 등의 측정

(1) (2) 이외의 통화에 관한 통화 시간은 다음과 같이 측정합니다.

가 통화 시간은 양측 계약자 회선 등을 연결하여 통화 가능한 상태로 만든 시점부터 기산하여 발신자 또는 수신자에 의한 송수화기 거치 등의 통화 종료 신호를 받아 해당 통화를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 시점까지의 경과 시간으로 하며, 당사(특정휴대전화사업자를 포함합니다.)의 기기로 측정합니다. 다만, 전화번호 안내 연결에 관한 통화에 관한 통화 시간에 대해서는 전화번호 안내 사업자의 기기로 측정합니다.

가. 다음 시간은 가.의 통화 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 회선 고장 등 통화 발신자 또는 수신자의 책임에 기인하지 않는 사유로 인해 통화 도중 일시적으로 통화가 불가능했던 시간

(나) 회선 고장 등 통화 발신자 또는 수신자의 책임에 기인하지 않는 사유로 통화를 종료한 경우, 해당 통화에 적용되는 요금표 제1표 제3(통화료)에 규정된 초수에 미달하는 단수 통화 시간

(2) SMS 기능을 이용한 문자 메시지 발신 횟수는 당사(특정 휴대전화 사업자를 포함합니다.)의 전기통신 설비에서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신자의 계약자 회선으로부터 SMS 기능을 이용한 문자 메시지 발신을 나타내는 정보를 수신한 횟수로 하며, 당사(특정

휴대전화 사업자를 포함합니다.)의 기기로 측정합니다.

14 데이터 통신량 측정 등

tt mobile 가입자가 사용한 데이터 통신량은 당사(특정 휴대전화 사업자를 포함합니다.)의 기기에 의해 측정합니다.

15 당사 장비의 고장 등으로 통화료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었던 경우의 처리

(1) 당사 장비의 고장 등으로 인해 통화 요금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었던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가 이외의 경우	파악 가능한 실적을 바탕으로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1 일 평균 통화 요금이 최저가 되는 값에, 산정할 수 없었던 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
가 지난 1 년간의 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	기기 고장 등으로 인해 통화가격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었던 날의 첫날(첫날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기 고장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날)을 포함한 요금월의 직전 12 개 요금월 각 요금월의 1 일 평균 통화가격 중 가장 낮은 값에 산정할 수 없었던 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1)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tt mobile 계약자와 협의하여 그 사정을 참작합니다.

16 계약 해지료 지급 의무의 면제

당사는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tt mobile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새롭게 당사의 tt mobile 계약을 체결한 경우, 요금표 제 1 표 제 1(기본 사용료)에 규정된 요금의 지불을 면제합니다.

17 tt mobile 통신 서비스 이용 시 금지 행위

(1) 당사 또는 타인의 지적 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의장권, 상표권 등)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타인의 재산, 사생활 또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타인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비방·중상·모욕하고, 타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조장하거나 그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4) 사기, 업무 방해, 규제 약물 남용, 아동 매춘, 예금 계좌 및 휴대폰의 불법 매매 등의 범죄 행위에 연결되거나 연결될 우려가 있는 행위

(5) 음란물, 아동 포르노 또는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 이미지, 영상, 음성 또는 문서 등을 전송 또는 표시하는 행위, 또는 이를 수록한 매체를 판매하는 행위, 또는 그 전송, 표시, 판매를 연상시키는 광고를 표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

(6) 마약 범죄, 규제 약물, 지정 약물, 광고 금지 고시품(지정 약물 등일 가능성이 있다고 고시되어 광고 등을 광역적으로 금지된 물품) 또는 이를 포함한 소위 위험 약물 남용과 연결되거나 연결될 우려가 높은 행위, 미승인 또는 사용 기한이 지난 의약품 등의 광고를 하는 행위, 또는 인터넷상에서 판매 등이 금지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7)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광고 규제 대상인 희귀 야생동식물 종의 개체 등에 대한 광고를

하는 행위
(8) 대부업 등록 없이 금전 대여 광고를 하는 행위
(9) 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영업 행위(무한 연쇄 판매(네즈미코)의 개설, 운영 또는 이를 권유하는 행위, 또는 악질적인 연쇄 판매 거래 등)
(10) 인터넷 이성 소개 사업(만남 사이트)의 개설, 운영 또는 이용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그 우려가 있는 행위
(11) 당사 설비에 축적된 정보 또는 tt mobile 서비스를 통해 이용 가능한 정보를 변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12) 불법 접근 행위 또는 불법 접근 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그리고 제 3 자를 사칭하여 tt mobile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당사의 전기통신 설비에 권한 없이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위장하기 위해 메일 헤더 등의 부분에 조작을 가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13)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14) 바이러스 등 유해한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전송하거나 이를 타인이 수신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행위
(15) 화면상의 대화 흐름을 방해하거나 다른 계약자가 실시간으로 조작·입력하려는 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16) 사회 통념상 타인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이메일을 전송하는 행위
(17) 무단으로 타인에게 광고, 선전 또는 권유 이메일을 전송하는 행위
(18) 당사 또는 타인의 전기통신 설비의 이용 또는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19) 불법 도박·갬블을 행하게 하거나 불법 도박·갬블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20) 불법 행위(권총 등의 양도, 총포·폭발물의 부정 제조, 아동 포르노 제공, 공문서 위조, 살인, 협박 등)를 수주, 중개 또는 유인(타인에게 의뢰하는 것을 포함)하는 행위
(21) 사람 살해 현장 이미지 등 잔혹한 정보, 동물을 살상·학대하는 이미지 등 정보, 기타 사회 통념상 타인에게 현저한 혐오감을 주는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는 행위
(22) 사람을 자살로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또는 제 3 자에게 해가 미칠 우려가 높은 자살 수단 등을 소개하는 등의 행위
(23)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tt mobile 계약자 등에게 통신량을 재판매 및 양도하는 행위
(24) 해당 행위가 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조장하는 방식 또는 목적으로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
(25) 기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다고 당사가 판단한 행위
(26) 기타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18 대량의 전자 메일(SMS 포함) 발송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

회사는 이메일(SMS 포함) 기능을 이용하여 1 의 계약자 회선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한 양을 초과하는 이메일(SMS 포함) 발송이 이루어진 경우, 별기 17 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다만, 해당 tt mobile 계약자로부터 해당 발송 행위가 해당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있고, 회사가 해당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9 자영업 단말기기의 접속

(1) 계약자(로밍 계약자를 제외합니다. 이하 이 별기 19 에서 동일합니다.)는 그 계약자 회선에, 또는 그 계약자 회선에 접속되어 있는 전기통신 설비를 통해, 자영 단말기(tt mobile 서비스의 계약자 회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가 및 나 표시(이하 "기술적합 마크"라 합니다.)에 의해 당사 등이 무선설비규칙 및 기술기준 등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한합니다.이하 이 별기 19 에서 동일합니다.)를 연결할 때에는, 당사가 정한 서면에 따라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서비스 취급소에 그 연결을 요청해 주십시오.

가. 특정 무선 설비의 기술 기준 적합 증명 등에 관한 규칙(1981 년 우정성령 제 37 호) 양식 제 7 호 또는 제 14 호의 표시

가 단말기기의 기술기준 적합 인정 등에 관한 규칙(2004 년 총무성령 제 15 호) 양식 제 7 호 또는 제 14 호의 표시

(2) 당사 등은 (1)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요청을 승낙합니다.

가. 연결하는 단말 설비가 무선 설비 규칙에 적합하지 않을 때.

가. 그 접속이 별기 7 의 기술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을 때.

가. 해당 연결이 사업법 시행 규칙 제 31 조에 정한 경우에 해당할 때.

(3) 당사 등은 (2)의 요청 승낙에 있어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접속에 사용하는 단말 설비가 무선 설비 규칙 및 기술 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가 기술적 적합성 마크로 무선설비규칙 및 기술기준 등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을 때.

가 사업법 시행규칙 제 32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4) 당사 등의 담당자는 (3)의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소정의 증명서를 제시합니다.

(5) 계약자가 그 단말 설비를 변경한 경우에도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6) 계약자는 해당 계약자 회선에 대한 단말 장비의 연결을 중단할 경우, 그 사실을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서비스 취급소에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자영 전기통신 설비의 접속

(1) tt mobile 계약자는 해당 계약자 회선에, 또는 해당 계약자 회선에 연결된 전기통신 설비를 통해 자영 전기통신 설비(이동 무선 장치의 경우, tt mobile 서비스의 계약자 회선에 연결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가 및 나 표시(이하 "기술적합 마크"라 함)에 의해 당사 등이 무선 설비 규칙 및 기술 기준 등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한합니다.이하 이 별기 20 에서 동일합니다.)를 연결할 때는 당사가 정한 서면에 따라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서비스 취급소에 그 연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2) 당사는 (1)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요청을 승낙합니다.

가. 연결하려는 단말 설비가 무선설비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가. 해당 연결이 별기 7 의 기술 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을 때.

가. 해당 연결로 인해 당사의 전기통신 회선 설비 유지가 경영상 어려워진다는 점에 대해 총무대신의 인정을 받은 경우.

(3) 회사는 (2)의 요청을 승낙함에 있어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접속이 무선설비규칙 및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가. 기술적 적합성 마크로 무선설비규칙 및 기술기준 등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을 때.

가 사업법 시행 규칙 제 32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4) 당사 담당자는 (3)의 검사를 수행할 경우, 소정의 증명서를 제시합니다.

(5) 계약자가 그 자영 전기통신 설비를 변경한 경우에도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6) 계약자는 해당 계약자 회선에 대한 자영 전기통신 설비의 연결을 중단할 경우, 그 사실을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서비스 취급소에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당사의 유지 책임

당사는 당사가 설치한 전기통신 설비를 사업용 전기통신 설비 규칙(1985 년 우정성령 제 30 호)에 적합하도록 유지합니다.

22 검사 등을 위한 단말 장비 반입

tt mobile 계약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그 단말 설비(이동 무선 장치에 한함) 또는 자영 전기통신 설비(이동 무선 장치에 한함)를 당사가 지정한 기일에 tt mobile 통신 서비스 취급소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반입해 주셔야 합니다.

(1) 별기 5 또는 19 의 규정에 따른 단말 장비 검사를 받을 때.

(2) 전파법에 따른 단말 장비 또는 자영 전기통신 장비의 검사를 받을 때.

23 상호 접속 통신의 요금 취급

별기 24 에 규정된 접속 형태에 따라 이루어지는 상호 접속 통신의 요금은, 해당 통신과 타망 상호 접속 통신을 합하여 별기 24 에 규정된 요금 설정 사업자가 그 계약 약관 등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며, 요금 청구 등 요금에 관한 기타 취급에 대해서는 별기 24 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4 상호 접속 통신의 접속 형태와 요금의 취급

<table>
<tr><th colspan="4">접속 형태</th><th>요금 취급 등</th></tr>
<tr><td rowspan="3">1</td><td colspan="3" rowspan="2">발신
: 당사 계약자 회선</td><td>요금 설정 사업자
: 당사</td></tr>
<tr><td>요금 청구 사업자
: 당사</td></tr>
<tr><td colspan="3">수신
: 휴대전화 사업자에 관한 전기통신 설비</td><td>요금 지불이 필요한 자
: 해당 통화의 발신에 관한 계약자 회선의 계약자</td></tr>
<tr><td></td><td colspan="3"></td><td>요금에 관한 기타 취급
: 약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td></tr>
<tr><td rowspan="5">2</td><td rowspan="5">발신
: 당사의 가입자 회선

수신
:
가입전화사업자(타망 공중전화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별기 24 에서</td><td colspan="2" rowspan="4">(1) (2) 또는 (3) 이외의 경우</td><td>요금 설정 사업자
: 당사</td></tr>
<tr><td>요금 청구 사업자
: 당사</td></tr>
<tr><td>요금 지불 의무자
: 해당 통화의 발신에 관한 계약자 회선의 계약자</td></tr>
<tr><td>요금에 관한 기타 취급
: 약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td></tr>
<tr><td>(2) 전기통신번호 규칙 제 10 조 제 3 호에</td><td>① ②부터 ④ 이외의 경우</td><td>요금 설정 사업자
: 해당 전기통신번호의 지정을 받은 중계 사업자</td></tr>
</table>

	동일합니다.) , IP 전화사업자 또는 중계사업자에 관한 전기통신설비	규정된 전기통신번호를 사용하여 통화를 한 경우		요금 청구 사업자 : 해당 전기통신번호의 지정을 받은 중계사업자 또는 가입전화사업자
				요금 지불 의무자 : 해당 전기통신번호의 지정을 받은 중계사업자의 계약약관 등에 정한 자
				요금에 관한 기타 취급 : 해당 전기통신 번호의 지정을 받은 중계사업자의 계약 약관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NTT 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에 관한 전기통신번호(0570 또는 0180 에 한함)를 사용하여 통화를 한 경우 (발신자에게 과금하는 취급을 받은 경우)	요금 설정 사업자 : NTT 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요금 청구 사업자 : 당사
				요금 지불이 필요한 자 : 해당 통화의 발신에 관한 계약자 회선의 계약자
				요금에 관한 기타 취급 : 약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③ NTT 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에 관한 전기통신번호(0570 또는 0180 에 한함)를 사용하여 통화를 한 경우 (수신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취급을 받은 경우)	요금 설정 사업자 : NTT 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요금 청구 사업자 : NTT 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요금 지불 의무자 : NTT 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의 계약 약관 등에 정한 자
				요금에 관한 기타 취급 : NTT 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의 계약 약관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④ 소프트뱅크 주식회사에 관한 전기통신번호(0570	요금 설정 사업자 : 소프트뱅크 주식회사
				요금 청구 사업자 : 당사

			에 한함)를 사용하여 통화를 한 경우	
				요금 지불 의무자 : 해당 통화의 발신에 관한 계약자 회선의 계약자
				요금에 관한 기타 취급 : 약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동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또는 서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전보 서비스 이용에 관한 통화를 한 경우		요금 설정 사업자 : 동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또는 서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요금 청구 사업자 : 당사
				요금 지불 의무자 : 해당 통화의 발신에 관한 계약자 회선의 계약자
				요금에 관한 기타 취급 : 동일본전신전화 주식회사 또는 서일본전신전화 주식회사의 계약 약관 등에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3	발신 : 휴대전화 사업자에 관한 전기통신 설비 수신 : 당사의 계약자 회선			요금 설정 사업자 : 휴대전화 사업자
				요금 청구 사업자 : 휴대전화 사업자
				요금 지불 의무자 : 해당 이동통신 사업자의 계약 약관 등에 정한 자
				요금에 관한 기타 취급 : 해당 이동통신 사업자의 계약 약관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4	발신 : 가입전화 사업자에 관한 전기통신설비 수신 : 당사의 계약자 회선	(1) (2) 이외의 경우		요금 설정 사업자 : 당사 또는 가입전화사업자
				요금 청구 사업자 : 가입전화사업자
				요금 지불이 필요한 자 : 해당 가입전화 사업자의 계약 약관 등에 정한 자
				요금에 관한 기타 취급 : 해당 가입전화 사업자의 계약 약관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동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또는 서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가 제공하는 가입전화 서비스에 관한 전기통신 설비로부터의 통화로, 별기 26 에 규정된 협정 사업자가 전기통신 번호 또는 KDDI 주식회사에 관한 전기통신 번호(0077 에 한함)에 의해 제공하는 전기통신 서비스에 관한 전기통신 설비를 경유하는 경우	요금 설정 사업자 : 동일본전신전화 주식회사 또는 서일본전신전화 주식회사
			요금 청구 사업자 : 별기 26 에 규정된 협정 사업자 또는 KDDI 주식회사
			요금 지불 의무자 : 해당 사업자 또는 KDDI 주식회사의 계약 약관 등에 정한 자
			요금에 관한 기타 취급 : 해당 사업자 또는 KDDI 주식회사의 계약 약관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발신 : IP 전화 사업자에 관한 전기통신 설비 수신 : 당사의 계약자 회선		요금 설정 사업자 : IP 전화 사업자
			요금 청구 사업자 : IP 전화 사업자
			요금 지불 의무자 : 해당 IP 전화 사업자의 계약 약관 등에 정한 자
			요금에 관한 기타 취급 : 해당 IP 전화 사업자의 계약 약관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발신 : 본국 외에 설치된 전기통신 설비 수신 : 당사의 계약자 회선		요금 설정 사업자 : 중계 사업자
			요금 청구 사업자 중계 사업자
			요금 지불이 필요한 자 : 해당 중계 사업자의 계약 약관 등에 정한 자
			요금에 관한 기타 취급 : 해당 중계 사업자의 계약 약관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5 특정 전기통신 서비스

특정 전기통신 서비스는 특정 휴대전화 사업자의 LTE 약관, au(5G) 약관, Xi 약관, 도코모(5G) 약관, 3G 통신 서비스 약관, 4G 통신 서비스 약관 및 소프트뱅크(5G) 약관에 정한 특정 전기통신 서비스와 동일합니다.

26 특정 사업자

특정 협정 사업자는 특정 이동통신 사업자의 LTE 약관, au(5G) 약관, Xi 약관, 도코모(5G) 약관, 3G 통신 서비스 약관, 4G 통신 서비스 약관 및 소프트뱅크(5G) 약관에 정한 특정 협정

사업자와 동일합니다.

27 전화번호 안내 사업자

전화번호 안내 사업자는 특정 휴대전화 사업자의 LTE 약관, au(5G) 약관, Xi 약관, 도코모(5G) 약관, 3G 통신 서비스 약관, 4G 통신 서비스 약관 및 소프트뱅크(5G) 약관에 정한 전화번호 안내 사업자와 동일합니다.

28 계약자의 지불 상황 등의 정보를 통지하는 전기통신 사업자

주식회사 NTT 도코모, KDDI 주식회사, 오키나와 셀룰러 전화 주식회사, 소프트뱅크 주식회사, UQ 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주식회사 윌컴 오키나와, 주식회사 사제스탬, 주식회사 라넷, 주식회사 야마다 전기, 주식회사 노지마, 일본통신 주식회사,시오도메 모바일 주식회사, 동일본여객철도 주식회사, 니프티 주식회사, 프리빗 주식회사, 톤 모바일 주식회사, UQ 모바일 오키나와 주식회사, 빅로브 주식회사, 주식회사 TOKAI 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액셀, SORA SIM 주식회사, 주식회사 LinkLife, 주식회사 드림 트레인 인터넷, 주식회사 메디에이터, 주식회사 J:COM 도쿄, 주식회사 J:COM 이스트,주식회사 제이컴 사이타마, 주식회사 제이컴 치바, 주식회사 케이블넷 시모노세키, 주식회사 제이컴 규슈, 주식회사 쓰치우라 케이블 TV, 주식회사 제이컴 타마, 주식회사 제이컴 도카츠카츠시카, 주식회사 제이컴 도쿄 북부, 주식회사 제이컴 나카노, 주식회사 제이컴 미나토 신주쿠, 주식회사 제이컴 치바 센트럴, 주식회사 제이컴 이치카와, 주식회사 제이컴 후나바시 나리시노, 주식회사 제이컴 북간토, 주식회사 지 제이컴 가와구치 토다,주식회사 제이컴 무사시노 미타카, 주식회사 제이컴 하치오지, 주식회사 제이컴 히노, 주식회사 제이컴 아다치, 주식회사 제이컴 오타, 주식회사 제이컴 쇼난, 주식회사 제이컴 웨스트, 주식회사 제이컴 삿포로, 주식회사 제이컴 미나미요코하마, 주식회사 주피터 텔레콤, 스마트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주식회사 츄피 COM 히로시마, 주식회사 라쿠텐,주식회사 STNet, LINE 모바일 주식회사, 주식회사 나가사키 케이블 미디어, 주식회사 커뮤니티 네트워크 센터, H.I.S.Mobile 주식회사, DXHUB 주식회사, 주식회사 센터 모바일, 누구나 모바일 주식회사

29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취급하는 옵션 기능

1 2, 3 이외의 것	없음
2 A 플랜 제 1 종 듀얼 타입에 관한 것	SMS 기능, 통화 중지 기능, 해외 로밍 기능
3 A 플랜 제 2 종 듀얼 타입에 관한 사항	SMS 기능, 해외 로밍 기능
4 D 플랜 듀얼 타입 관련	SMS 기능, 스팸 전화 차단 기능, 해외 로밍 기능
5 S 플랜 듀얼 타입 관련 사항	SMS 기능

30 표준 기능

종류	제공 조건
1 자동 착신전송 기능(착신전송 서비스/전환 전화 서비스)	해당 계약자 회선에 수신되는 통화를 사전에 지정된 다른 계약자 회선 등(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것에 한함)으로 자동적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비고	(1) tt mobile 서비스의 가입자 회선(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동 무선 장치를 이용하는 것에 한합니다.)에 한해 제공합니다. (2) 이 기능으로 전환되는 통화의 요금은 이 기능을 이용하는 가입자 회선의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3) 본 기능을 이용할 경우, 전환이 2 회 이상에 걸쳐 발생하는 등 일반적 이용 방식과 다를 때에는 통화 품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4) 본 기능을 이용 중인 가입자 회선으로의 통화 및 본 기능으로 전환되는 통화에 대해서는, 전파가 잘 전달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가입자 회선에 연결된 이동 무선 장치가 소재하는 지역을 교환 설비에서 확인할 수 없었을 경우, 그 직전에 확인된 지역에 소재하는 이동 무선 장치와의 통화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5) 본 기능에 관한 기타 제공 조건에 대해서는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발번요청기능(번호통지요청서비스/번호통지부탁서비스)	해당 가입자 회선에 수신된 통화 중 발신자 번호가 알려지지 않은 통화에 대해, 발신자에게 발신자 번호를 알려주고 다시 걸어 달라는 취지를 통보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비고	(1) tt mobile 서비스의 가입자 회선(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동 무선 장치를 이용하는 것에 한함)에 한해 제공합니다. (2) 이 기능으로 응답하는 통화에 관한 요금은 제 42 조(통화료 지불 의무) 및 제 51 조(상호 접속 통신의 요금 처리)에 규정된 지불 의무자가 지불합니다. (3) 본 기능에 관한 기타 제공 조건은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1 계약자의 성명 등을 통지하는 중계 사업자

소프트뱅크 주식회사, NTT 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32 계약자의 성명 등 정보를 통지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주식회사 NTT 도코모, KDDI 주식회사, 오키나와 셀룰러 전화 주식회사, 소프트뱅크 주식회사, 주식회사 윌컴 오키나와, 라쿠텐 모바일 주식회사, 이온 리테일 주식회사

33 대량의 국제 통화 발신이 이루어진 경우의 처리

당사는 국제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1 의 계약자 회선으로부터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양을 초과하는 발신이 이루어졌을 경우, 별기 17 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다만, 해당 tt mobile 계약자로부터 해당 발신 행위가 해당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있고, 당사가 해당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4 KT 선불 SIM

(1) tt mobile 가입자가 tt mobile 통신 서비스와 함께 KT 선불 SIM 이용을 신청한 경우, 별도로 당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KT 선불 SIM 이용에 관한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용자 등록 완료 후 90 일 이내에 한국 국내에서 KT 선불 SIM 이용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해당 SIM 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tt mobile 가입자가 KT 선불 SIM을 이용하는 경우, 주식회사 KT의 KT 선불 SIM 관련 이용약관 등이 적용되며, 해당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이 허용됩니다. 또한 KT 선불 SIM 관련 이용약관 기타 계약 또는 한국 법령, 가이드라인 기타 정부 결정에 따라 약관에 따른 사전 통지 없이 이용 요금 기타 계약 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부 칙

(시행일)

약관은 2026년 3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